

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」 일부개정 동의안

의안 번호	8-58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3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국내·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」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고문, 수석부회장 직 추가(제5조)
 -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
 -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
- 임원 임기 연장 : 1년 → 2년(제6조)
- 정기총회 횟수 조정 : 상·하반기(연 2회) → 연 1회(제7조)
- 사무국 지위 승격 : 사무국 → 사무처(제14 ~ 15조)
- 분과위원회 신설(제17조)
 -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
 -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

- 개정 규약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-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규약 : 붙임5
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(안)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” 을 “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, 감사 2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” 를 “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회장은” 을 “수석부회장은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 를 “2년으로 하되,” 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고문)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제2항 중 “상·하반기 1회씩을” 을 “연 1회를” 로 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3조)의 제목 “(사무국)” 을 “(사무처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무국을” 을 “사무처를” 으로, “사무국장” 을 “사무처장” 으로, “둔다.” 를 “두고, 시·군·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무국장은” 을 “사무처장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무국의” 를 “사무처의” 로, “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” 를 “내부운영 방안(방침)으로” 로 한다.

제15조(종전의 제14조)의 제목 “(사무국의 업무)” 를 “(사무처의 업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무국은” 은 “사무처는” 으로 한다.

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분과위원회)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제19조(종전의 제17조)제2항 중 “사무국” 을 “사무처” 로 한다.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<u>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</u>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<u>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, 회장 결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 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임원)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, 감사 2인,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<u>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수석부회장은</u>.....</p> <p>..... <삭 제></p>
<p>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<u>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(임원 임기) <u>2년으로 하되,</u>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(생 략)</p> <p>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총회와 임시위원회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회총회는 <u>상 · 하반기 1회씩</u>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 임시위원회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7조(고문)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연 1회</u> 를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<u>제8조 ~ 제12조</u> (생 략)	<u>제9조 ~ 제13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<u>제13조(사무국)</u>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<u>사무국</u> 을 두고 <u>사무국장</u> 1인과 필요한 직원을 <u>둔다</u> . ② <u>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</u> ③ <u>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,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</u>	<u>제14조(사무처)</u> ① <u>사무처를</u> <u>사무처장</u> <u>두고, 시·군·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② <u>사무처장은</u> ③ <u>사무처의</u> <u>내부운영 방안(방침)으로</u>
<u>제14조(사무국의 업무)</u> ① <u>사무국은</u>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 ~ 6 (생 략)	<u>제15조(사무처의 업무)</u> ① <u>사무처는</u> 1 ~ 6 (현행과 같음)
<u>제15조</u> (생 략) <신설>	<u>제16조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 <u>제17조(분과위원회)</u>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<u>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</u> .
<u>제16조</u> (생 략)	<u>제18조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
<u>제17조(부담금)</u> ① (생 략) ② 부담금은 <u>사무국</u>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 · 관리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<u>제19(부담금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사무처</u> ③ (현행과 같음)
<u>제18조 ~ 제22조</u> (생 략)	<u>제20조 ~ 제24조</u> (현행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)